

청주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08. 9. 24. 규정 제1206호
제1차 개정 2008. 11. 10 규정 제1210호
제2차 개정 2020. 5. 11 규칙 제1517호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발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(당연직)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 2008.11.10), (개정 2020.5.11.)

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(개정 2008. 11. 10)
2.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
3. 초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5.11.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무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(개정 2020.5.11.)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교무위원회와의 관계) ① 총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08. 11. 10)

②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08. 9. 24. 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8. 11. 10.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5. 11. 규칙 제1517호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